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59호서식](2013.02.23 개정)

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① 법 인 명				② 사업자등록번호	
③ 대 표 자				④ 전화번호	
⑤ 소 재 지				⑥ 청산인성명	
⑦ 청산인 주민등록번호					
⑧ 업 태		⑨ 종 목		⑩ 계산구분	[ ] 확정 [ ] 중간
⑪ 해산등기일			⑫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		
⑬ 직전 사업연도			⑭ 의제 사업연도		

구 분	법 인 세		
	청 산 소 득	토지등 양도소득	계
⑮ 과 세 표 준			
⑯ 세 율			
⑰ 산 출 세 액			
⑱ 가산세액			
⑲ 공 제 세 액			
⑳ 차감납부세액			

신고인은 「법인세법」 제84조 및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며, 위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[해산의 경우] 1. 잔여재산분배(확정)시 재무상태표	수수료 없 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작 성 방 법

1. ⑩계산구분란: 「법인세법」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해당란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
2. ⑪해산등기일란: 해산등기일을 적습니다.

3. ⑫잔여재산가액 확정일란: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또는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적습니다.

4. ⑭의제사업연도란: 「법인세법」 제8조에 따라 적습니다.

5. ⑮과세표준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란: "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(별지 제59호서식 부표)"의 ⑥, ⑯란의 각 해당금액을 적고, 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「법인세법」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
6. ⑱가산세액란: "가산세액계산서(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)"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.

7. ⑲공제세액란: 「법인세법」 제85조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시 납부한 법인세액을 적습니다.

8. 2010.7.1 이전에 합병하여 청산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개정전 신고서로 신고합니다.